

●광주지방고용노동청공고 제2026-157호

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 부당이득금 회수 처분 결정통지 및 납부 촉구를 위해 공문서를 등기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.

2026년 07월 28일

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

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 부당이득금 회수결정 통지 공시송달 공고

1. 건명: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 부당이득금 회수 결정 및 납부 통지에 대한 공시송달
2. 근거: 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, 고용보험법 제73조의2, 행정절차법 제14조
3.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

성명	생년월일	주소	서류의 주요내용			송달 불능 사유
			명칭	처분사유	처분하고자 하는 내용	
김0정	1978. 1. 19.	광주광역시 서구	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 부당이득금 회수결정	육아기근로시간단축 지원가능기간(12개월) 초과하여 과다지급	회수기간: '24. 5. 1.~'24. 7. 31. 회수금액: 1,366,190원	동 서류를 1차: '26. 6. 19. 2차: '26. 7. 1. 발송하였으나 송달 불가 (폐문부재 등)

4. 공고기간: 2026. 7. 28. ~ 2026. 8. 11.(15일간)
5. 기타 사항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광주고용센터 기업지원팀 백영주(☎ 062-609-8652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